

화재보험요율서 변경 주요내용

(FILK 인증품 할인율 중심)

1. 화재보험 기초서류 일부변경

가. 화재보험약관(세부내용생략)

나. 화재보험요율서

2. 화재보험요율서의 일부변경 주요항목

가. 건물규정

- (1) 용어의 정의 : 불연재료, 내화피복
- (2) 건물의 구조급별 : 적용시 유의사항

나. 주택화재보험요율

- (1) 할인요율 : 소화설비할인(합산할인율, 추가할인율)
- (2) 특약요율 : 도난, 전기, 지진 등

다. 일반물건요율

- (1) 직업할증 : 병원, 요양소
- (2) 할인요율
 - 소화설비할인(합산할인율, 추가할인율)
 - 불연내장재할인(불연내장재건물, 준불연내장재건물) - 신설
- (3) 특정물건 : 지하도 소재물건요율
- (4) 특약요율
 - 변경 : 궤도차량, 도난, 전기, 지진 등
 - 신설 : 스프링클러누출, 급배수설비누출, 봉괴, 침강 및 사태확장담보 등

라. 창고물건요율

- (1) 할인요율 : 소화설비할인(합산할인율, 추가할인율)
- (2) 특약요율
 - 변경 : 궤도차량, 도난, 전기, 지진 등
 - 신설 : 스프링클러누출, 급배수설비누출, 봉괴, 침강 및 사태확장담보 등

마. 공장물건요율

- (1) 손해율할증 : 신설
- (2) 할인요율
 - 소화설비할인(합산할인율, 추가할인율)
 - 신설 : 봉괴, 침강 및 사태확장담보 등

3. 개정요율서 세부내용 요약 및 적용(협회 점검업무관련 중심)

가. 주요개정내용

- (1) 소화기 및 소화설비의 주요구성품을 방재시험연구소의 인증품(FILK인증품)으로 시설한 경우 추가할 인율을 적용함.(기본요율의 0.25%~7.5% 인하효과)
- (2) 건물의 내벽 및 천정의 내장재를 방재시험연구소의 인증을 받은 불연, 준불연재로 설치한 경우 기본요율의 5~10%의 할인규정 신설

나. 시행일자 : 1994. 8. 16

다. 세부내용 요약 및 적용

- (1) 소화설비추가할인율(신설)

소화기 및 소화설비의 주요구성품을 방재시험연구소의 인증품(FILK인증품)으로 시설하였을 경우에
는 건물, 그 수용동산 및 특히 정한 것에 대하여 추가할인율을 적용한다.

* 현행 소화설비할인율 적용은 변동없음

- 적용대상

- 소화설비할인규정에 의거 소화설비할인이 가능한 물건
- 주택, 일반, 공장, 창고물건에 모두 적용.

- 적용방법

- 소화기추가할인의 경우는 소화설비할인규정중 '초기소화설비규정'(소방법에 의한 적용소화기 배치,
단 완화규정은 적용치 않음)에 맞게 소화기(FILK 인증품)를 설치한 경우에 적용하며(기본요율의
3%), 건물 단위로 할인율을 판정함. 다만, 소화설비의 부분할인의 경우에는 소화설비할인 대상부분
에 한하여 적용한다.
- 추가할인율과 소화설비할인율과의 합이 60%를 초과할 수 없음.
- 자동화재경보설비 경우 주요구성품(감지기, 수신기, 발신기)을 FILK인증품으로 2종이상 설치시 각
각의 추가할인율을 합산하여 적용함.

* 적용사례 : 후첨참조

- (2) 불연내장재할인(신설)

구조급수가 1급 또는 2급인 건물로서 내벽 및 천정에 내장재를 방재시험연구소에서 인증(FILK 인증
품)한 불연내장재 또는 준불연내장재를 사용한 건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한다.

- * 불연내장재건물 : 기본요율의 10% 할인
- * 준불연내장재건물 : 기본요율의 5% 할인

- 적용대상

- 요율서상 일반물건, 공장물건에 적용.
- 구조급수가 1급 및 2급인 건물.
- 보험목적물이 건물인 경우만 적용(수용동산 등 제외)

- 적용방법

- 할인율은 건물단위로 적용
- $\frac{\text{FILK인증 불연내장재 설치면적 합계}}{\text{천정 및 내벽의 면적 합계}} \times 100 \geq 80\%(\%)$ 인 경우 기본요율의 10% 할인 적용
- $\frac{\text{FILK인증 불연 또는 준불연내장재 설치면적 합계}}{\text{천정 및 내벽의 면적 합계}} \times 100 \geq 80\%(\%)$ 인 경우 기본요율의 5% 할인 적용

- 검사

- 특수건물 : 한국화재보험협회(안전점검 및 소화설비할인검사시)

- 비특수건물 : 原受社 요청물건에 한하여 협회가 실시

* 적용사례 : 후첨참조

(3) 직업할증적용기준개정

일반물건의 직업할증내용 중 병원, 요양소할증 적용대상이 '환자 10인이상의 수용설비를 갖춘경우'에서 '환자 30인이상...'로 변경됨

(4) 건물규정의 '용어의 정의'개정

- * '불연재료'의 정의 중 「이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」에 방재시험연구소의 성능을 인정받은 것을 포함키로 함.
- * '내화피복'의 정의 중 「이와 유사한 내화력을 가진 불연성의 물질」에 방재시험연구소의 성능을 인정받은 것을 포함키로 함.

- 성능인정대상품목

- 불연재료 : FILK인증품 또는 FS 004 시험합격품
- 내화피복 : FILK인증품 또는 FS 019 시험합격품

- 성능인정기준

- 불연재료 : FS 004 [건축내장재료의 난연성능시험방법]중 불연재료
- * 내화피복 : FS 019[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]

(4) 건물규정의 '용어의 정의' 개정

구조급수 1, 2급건물의 판정에 있어 외벽의 경우 방재시험연구소의 시험결과에 의거 해당급별로 판정받은 것을 인정키로함.(현재는 조적조및 콘크리트조만 인정)

- 성능인정대상 : FILK인증품(모든 건물에 적용) 또는 FS 019시험 합격품(당해 건물에 한해 적용)
- 구조급별판정 : 1급구조-2시간 내화, 2급구조-1시간 내화.
- 성능인정기준 : FS 019 [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]
- FILK인증품 : 인슈그라스울벽판(제조자 : 연합인슈)-두께 75mm, 100mm, 2시간내화.

라. 할인율 적용대상 인증제품('94. 8월현재)

소화기		내장재	소화설비 구성부품
제조자	품목		
삼우금속(주)	■ 축압식 분말소화기(5종) - 0.5kg(A ₁ B ₁ C) - 2.5kg(A ₂ B ₂ C) - 4.5kg(A ₄ B ₅ C)	- 1.5kg(A ₂ B ₃ C) - 3.3kg(A ₃ B ₅ C)	없음 없음

4. 적용사례

가. 개정소화설비할인 및 추가할인 적용사례

사례	할인내용		비고
	현재	개정	
자동화재경보설비가 소화설비규정에 맞게 설치되어 할인(기본요율의 8%) 가능하고 수신기가 FILK인증품으로 설치된 경우	8%	8.8%	자동화재경보설비 : 8% 추가할인 : 0.8%
옥내소화전설비가 소화설비할인규정에 의거 8% 할인이 가능하고 호스, 노즐 및 소화기가 FILK 인증품으로 설치된 경우	8%	12.6%	옥내소화전 : 8% 추가할인 : 1.6% 소화기추가할인 : 3%
초기소화설비규정에 맞게 FILK인증 소화기가 설치되고 옥내소화전 등 기타소화설비가 할인규정에 미흡한 경우	없음	없음	* 소화기추가할인은 기타 소화설비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적용
자동화재경보설비가 소화설비할인규정에 의거 8% 할인 가능하고 수신기 및 감지기를 FILK인증품으로 사용한 경우	8%	10%	자동화재경보설비 : 8% 추가할인(수신기) : 0.8% 추가할인(감지기) : 1.2%
옥외소화전설비가 소화설비할인규정에 의거 12% 할인이 가능하고 호스를 FILK인증품으로 사용(노즐은 일반제품)한 경우	12%	12%	옥내, 외소화전설비의 추가할인율은 호스 및 노즐 모두 FILK 인증품 사용시에만 적용가능
소화설비 할인규정에 의거 스프링클러설비가 50%, 자동화재경보설비가 5% 할인 가능하고 스프링클러헤드를 FILK인증품으로 사용한 경우	55%	60%	스프링클러설비 : 50% 자동화재경보설비 : 5% 추가할인율 : 7.5% * 할인율 합계가 60%를 초과 못함
옥내소화전설비가 소화설비할인규정에 의거 8% 할인이 가능하고 소화기를 FILK인증품을 사용한 경우	8%	11%	옥내소화전 : 8% 소화기추가할인 : 3%

* 할인율 : 기본요율기준임

나. 불연내장재 할인 적용사례

사례	할인율 판정	비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건물전체의 내벽, 천장 면적 : 2,000 m² * 내벽, 천장 중 내장재 설치면적 : 1,500 m² * 내장재 미설치면적 : 500 m² * FILK인증품(불연재) 사용 면적 : 1,300 m² * 기타 내장재 설치면적 : 200 m² 	$\frac{1,300}{2,000} \times 100 = 65\%$ <p><u>∴ 할인불가</u></p>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건물전체의 내벽, 천장 면적 : 3,000 m² * 내벽, 천장 중 내장재 설치면적 : 2,400 m² * 내장재 미설치면적 : 600 m² * FILK인증품(불연재) 사용 면적 : 2,400 m² 	$\frac{2,400}{3,000} \times 100 = 80\%$ <p><u>∴ 기본요율의 10% 할인</u></p>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건물전체의 내벽, 천장 면적 : 3,000 m² * 내벽, 천장 중 내장재 설치면적 : 2,800 m² * 내장재 미설치면적 : 200 m² * FILK인증품(불연재) 사용 면적 : 1,300 m² * FILK인증품(준불연재) 사용면적 : 1,300 m² * 기타 내장재설치면적 : 200 m² 	$\frac{2,600}{3,000} \times 100 = 87\%$ <p><u>∴ 기본요율의 5% 할인</u></p>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건물전체의 내벽, 천장 면적 : 3,000 m² * 내벽, 천장 중 내장재 설치면적 : 2,800 m² * 내장재 미설치면적 : 200 m² * FILK인증품(준불연재) 사용면적 : 2,600 m² * 기타 내장재설치면적 : 200 m² 	$\frac{2,600}{3,000} \times 100 = 87\%$ <p><u>∴ 기본요율의 5% 할인</u></p>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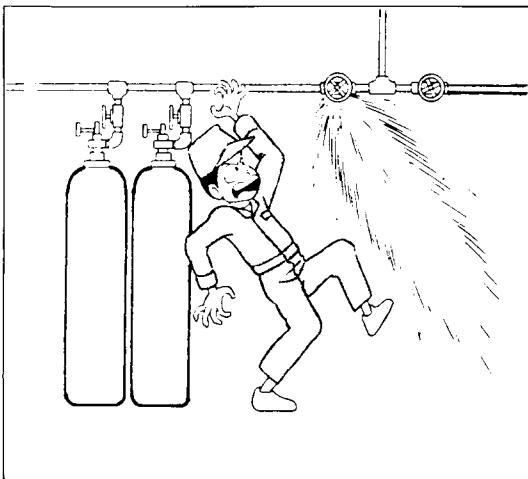


“

본 마크는 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소가 방화·안전 관련 제품에 대해 엄격한 시험검사를 실시하여, 기준을 만족하는 우수제품에 부여하는 품질인증마크입니다.

”

■ 이렇게 사고가 일어난다 ■



□ 사고개황

산소ガ스 충전소에서 빈 용기의 개폐밸브를 여는 순간 화재가 발생하였다.

□ 원인

개폐밸브의 디스크 패킹으로 사용되고 있던 가연성이 강한 폴리에틸렌계 수지가 밸브 스플들의 파괴로 인한 사고의 유출에 의하여 발화하고 부근의 가연물이 연소한 것으로 추정된다.

□ 대책

- 물질이 연소하기 위하여서는 가연물, 산소, 발화원이 필요하다. 산소 중에서는 가열을 하면 철도 연소할 수 있기 때문에 가연물을 제거하는 것과 발열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.
- 산소 분위기 중에서는 유지분과 같은 가연성 물질이나 스케일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.
- 밸브류 등에 사용하는 패킹은 내산소(耐酸素) 형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.

* 발열의 요소

- 배관 중의 미립자 이동

스케일, 미립자 등이 배관 가운데를 이동할 때 마찰열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.

- 단열압축

밸브를 급격히 개방하면 배관 내에서 압력이 급격히 상승하고, 이 때 단열압축이 되어 온도가 상승한다. 완전한 단열인 경우 계산상으로는 산소ガ스의 압력을 1기압에서 150기압으로 올리면 온도는 약 1,000°C 상승한다. 그래서 급격한 밸브 개폐의 금지, 유속의 제한 등도 주의하여야 한다. 또한 개폐밸브는 정기적으로 분해 정비를 하는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, 청결한 불연성의 패킹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.

위험관리정보 제 74 호

■ 발행일 : 1994. 10.

■ 발행처 : 한국화재보험협회 위험관리정보센터
(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-4)

☎ (02) 783-2121~35

■ 인쇄처 : 서라벌인쇄주식회사
☎ (02) 732-1851~5